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7918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07234	윤준병의원	‘25. 1. 6.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5002	김선교의원	‘24. 10. 29.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4.1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2210235	엄태영의원	‘25. 4. 30.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임산물 생산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

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

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법률 제 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과 임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을 증진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도(林道)”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재난 예방·대응, 산림으로 이동 및 접근 등을 위해 산림에 설치한 도로(「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속물을 말한다.

   가. 제23조에 따른 임도 표지

   나. 가드레일, 반사경 등 안전시설

   다. 차단기, 방호 울타리, 주·정차장, 대피소, 취수장 등 부대시설

   라. 토사유출·낙석방지 등 재해방지시설

마. 그 밖에 임도의 기능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임도사업”이란 임도와 관련한 조사·평가·설계·설치 및 유지·보수 등 임도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유림 소유주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도사업자”란 제2호의 임도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라. 그 밖에 임도사업과 관련된 조사·평가 및 유지·보수 등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4. “임도 예정노선”이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노선을 확정하기 전의 계획노선을 말한다.

5. “임도의 타당성평가”란 임도 예정노선을 대상으로 산림의 지리적·환경적 여건, 필요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도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의 체계적인 확

충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임도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임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임도와 지방임도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민간임도에 대하여는 제6조·제14조·제18조제1항·제22조 및 제2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임도의 종류) 이 법에서 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임도: 산림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유림내 임도. 다만, 임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포함할 수 있다.
2. 지방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유림과 사유림내 임도. 다만, 임도의 연결성 확보를 위하여 국유림을 포함할 수 있다.
3. 민간임도: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사유림 소유자”라 한다)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임도

제6조(임도의 관할 행정청) ① 임도별 관할 행정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임도: 산림청장
2. 지방임도: 지방임도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민간임도: 산림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임도별 관리자(이하 “임도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임도: 산림청장

2. 지방임도: 지방임도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민간임도: 임도를 설치한 사유림 소유자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국임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전국임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종합계획(이하 “전국임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전국임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국임도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전국임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산림의 임도계획(이하 “지역임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전국임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역임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역임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임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국임도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이를 시행·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임도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여 임도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임도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도설치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임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도 예정노선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임도계획에 포함된 임도에 대하여는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의 기여 및 산림보호·관리의 필요성
2. 지형·지질 등 임도 설치 가능성
3. 임도의 유지·관리 등 지속가능성
4. 산사태 및 산불 등 산림재난의 안정성
5. 전국적인 임도의 연결·배치계획 및 도로와의 연접 등 이용의 효

율성

6.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유무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임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도 예정노선이 전국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임도의 타당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임도 예정노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도의 타당성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임도의 노선 지정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한 임도

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임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지되거나 변경된 임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임도의 노선 선정 등) ① 민간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 예정 노선을 선정하여 임도의 설치 예정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 노선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간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림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평가가 적합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와 절차에 따라 민간임도의 설치계획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민간임도 설치

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지도·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임도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을 지정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지목이 산지 이외의 토지만 해당한다)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임도노선 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임도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도설치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제17조(임도의 설계 및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마련, 공익적 기능증진, 산림보호,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도 예정노선에 포함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국가임도 또는 지방임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도의 규모별·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를 시공하는 직전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 예정노선의 선정이 지연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치연도에 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난에 안전하고 생태 친화적인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설치에 필요

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임도의 관리 등) ① 임도관리자는 임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도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임도 중 그 일부를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청에서 관할하는 지방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 내에 진입로·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후에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 구간을 임도로 관리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임도로 포함하는 세부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설치 등을 위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죽·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예정노선 및 지정 지역과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3. 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의 채취

④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손실보상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임도설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임도 예정노선을 선정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임도의 노선 지정 지역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 매수·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4장 임도의 유지·보수 등

제21조(임도의 유지·보수)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임도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의 조성 및 경영, 이동 및 접근 등을 위하여 임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도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또는 임도의 구조개량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임도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임도시설의 점검·안전진단, 유지·보수 등 지원
2.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조사·복구 등 지원
3. 임도 피해 방지 지원사업
4. 그 밖에 임도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임도관리에 관한 대장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관할 임도의 현황과 임도 내 시설물 현황
2. 관할 임도의 유지·관리·보수 내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민간임도의 유지·관리) 민간임도는 임도를 설치한 사유림 소유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하되, 임도를 설치한 사유림 소유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도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임도 표지)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임도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 임도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도 표지의 종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임도관리자는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 등의 사유로 임도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 임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임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임도의 입구와 출구 등에 해당임도·통행금지의 기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힌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임도와 지방임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도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임도노선 또는 설치된 임도에서는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 옮기는 행위

제26조(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조물의 철거, 물건의 이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2. 제25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통행을 방해한 자

3. 제25조제2호에 따른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4. 제25조제3호에 따른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 옮긴 자

제27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 행정청은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관할 행정청이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의 가격평가 및 담보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임도가 설치된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임도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도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도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지원의 제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제28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임도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제31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를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도 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 등 임도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임도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행이 금지된 임도를 통행하거나 제한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구조물의 철거, 물건의 이전 등의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임도 표지 또는 통행금지 표지를 파손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